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26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5. 5. 26

다. 상 정 일 자 : 제128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6.2)상정.채택

2. 제안설명요지(황해룡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,
-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제명 띄어쓰기(안 제2조 별표1)
- 본문중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"「」"표기
(안 제3조 별표2)
- 기타 상위법령 등의 개·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
(안 제3조 별표2)

3. 참고사항 : 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-639(2004. 12.27)

“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” 공문관련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“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안내” 에의거 개별 조례 개정때 마다 일일이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문의 낫표 표시사항을 개정안 말미에 부기해 오던 번거로움을 없애기위해 우리구 모든 조례의 제명띄어쓰기 및 낫표 표시를 일괄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
- 본 조례제정은 지난 125회 임시회 폐회중 상임위원회시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심의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괄개정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권고한 사항으로
- 검토결과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조례를 실과장 책임하에 일일이 확인 검토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도 좋을것으로 사료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